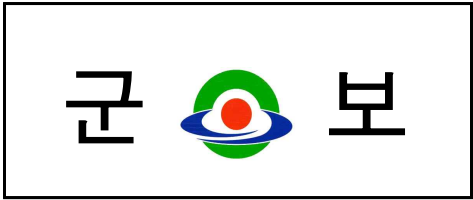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85호 2026. 2. 9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6-303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
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
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
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년 2월 9일

예 천 군 수



1. 조례명 :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원 및 위탁
운영체 범위를 변경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
함.

3. 주요내용

가. 보호자 정의 삭제 (안 제2조)

나. 장난감도서관 회원의 범위 변경(안 제5조)

- 일반회원 범위 : (당초)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→ (변경) 예천군 및 경북도청 신도시(안동시 풍천면)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
다.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위탁 대상 변경(안 제11조)

- (당초) 비영리법인·단체 등 → (변경) 비영리법인·단체, 개인

4. 개정조례안

- 붙임과 같음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(화)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고 : 주민행복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: 찬·반 여부와 그 사유

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,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전화, 전자우편, 방문 등

- 주소 : 우)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주민행복과
- 전화 : 054-650-6214
- 팩스 : 054-650-6360
- 전자우편 : bae19850811@korea.kr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행복과(전화: 054-650-621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조례 제 호

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“취학 전 아동과 함께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”을 “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및 경북도청 신도시(안동시 풍천면)”로, “아동의”를 “취학 전 아동의”로, “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”을 삭제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”를 “비영리법인·단체, 개인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4. “보호자”란 영유아의 친권자 ·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5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5. (현행과 같음)
제5조(회원제 운영) ①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 하여야 하며,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일반회원 : <u>취학 전 아동과 함께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,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.</u> 단 일반회원은 1가정 1 회원으로 한다. 2. (생략) ② (생략)	제5조(회원제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및 경북도청 신도시 (안동시 풍천면)</u> ----- ----- <u>취학 전 아동의</u> ----- ----- <u>보호자.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운영 및 위탁) ① 군수는	제11조(운영 및 위탁) ① -----

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
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·
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----- 비영리법인·
단체, 개인에게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